

大學圖書館運營上的

問題點과 그 合理化

李 光 宇

(全南大學校 中央圖書館)

目 次

- 1. 序 論
- 2. 職制確立의 問題
- 3. 專門職司書의 地位 및 處遇問題
- 4. 豫算의 問題
- 5. 結 論

圖 序 論

大學圖書館은 大學에 있어서의 教育 및 研究活動에 必要不可缺한 基本施設임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는 것이 通念化된지 이미 오래이다. 大學圖書館은 單只 資料를 保管함에 그치지 않고 積極의으로 蒐集된 資料의 効率의利用을 圖謀하고 學生, 敎授 및 餘他의 研究者들을 協助하여 可能한 最大限度의 成果를 거둘수 있도록 하는 重大한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大學圖書館界의 現況을 一瞥하여 보건데 各大學圖書館間에는 여러 方面에 있어서 견찰을 수 없는 커다란 格差가 있는데다가 特히나 組織 및 機構가 未整備狀態에 있을 뿐 아니라 管理運營面에 있어서는 盲點 乃至 非合理的인 點들이 許多히 가로놓여 있음을 直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施設 및 設備의 整備計劃조차도 講義室, 實驗室, 研究室等의 整備가 優先的으로 時急해 왔기 때문에 圖書館施設의 近代化가 遲延되고 있는 形便이며 그러므로써 大學圖書館의 機能을 充分히 發揮하지 못하고, 尙今 整備改善하여야 할 數多한 問題들을 內包하고 있다는 것이 숨길 수 없는 事實이다.

이와같은 不條理한 現狀에 直面하여 大學圖書館에 從事하고 있는 우리들 圖書館人들은 적어도 使命感을 느끼고 있는 以上 漠然히 袖手傍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數多한 整備改善하여야 할 問題들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나라 大學圖書館界가 時急히 解決해야 할 가장 根本的인면서도 緊迫한 것은 첫째로 職制確立의 問

題이고, 둘째로 專門職司書의 地位 및 處遇問題이며, 셋째로 豫算增加의 問題라 할수 있을 것인바 以下에서 이들을 順次的으로 論述한 다음 要約해서 結論을 내리 보기로 한다.

■ 職制確立의 問題

어떤 機關을 莫論하고 그 機關이 機關으로서 存在하고 그가 맡은바 機能을 發揮하기 爲하여서는 職制가 必要하다는 것은 再論不要의 常識이라 아니할 수 없다. 特히 調査研究의 直接的인 支援을 使命으로 하는 大學圖書館이란 機關은 大學의 心臟部의 存在라는 것은 누구나 否認할 수 없는 儼然한 事實이다. 그렇다면 大學이란 機構中에서 어떤 他機關보다도 優先하여 그 職制가 法令으로서 確立되어 있어야 할 機關이 圖書館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數多한 大韓民國의 法令을 다 훑어보아도 國立學校設置令 第13條의 2⁽¹⁾를 除外하고는 大學圖書館의 職制는 勿論이고 어떤 다른 圖書館의 職制에 關한 規定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事實上 韓國의 圖書館에는 職制가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職制가 없는 機關이 어떻게 事實上 存在하며 그 機能을 發揮하고 있는가 라고 反問하게 될 것은 當然하다. 이는 分明히 奇蹟中의 奇蹟이다. 이 奇蹟은 圖書館에 依한 職制에 依해서가 아니라 圖書館人들의 自覺에 依해서 이루어졌다는 事實은 輕忽히 看過해 버리기에 는 너무나 섭섭하다. 現象으로나마 大學圖書館을 運營해온 것은 至極히 非合理的이고도 不安全한 千態萬象의 內規에 依한 暫定規定에 依해서이다. 따라서 各大學圖館은 大同小異한 機能을 遂行하면서도 內規가 다르므로써 組織의 形態上 一律性이 없는 亂脈相을 呈示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로 因하여 圖書館行政上의 統制와 相互協助가 困難하고 모든 分野에 걸친 業務遂行은 姑息의이며 彌縫의인 領域에서 惡循環의 過程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論者は 이와 같은 大學圖書館의 運營上의 非合理性

에 留意하여 機會있을 때마다 꾸준히 職制確立의 問題를 提起하여 왔던바 昨年 秋季에 溫陽에서 열렸던 第五回 國立大學校 圖書館長 및 司書長會議에서 「國立大學校 附屬圖書館職制 및 定員擴充에 關한 建議案」을 作成하여 文教部에 提出할 것을 建議함과 同時에 同建議案 作成은 論者가 맡기로 하였고 最終案을 文教部에 提出하는 것은 慶北大의 羅炳旭館長을 비롯한 三名의 地方大學館長이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5個地方大學圖書館間에 數次에 걸친 協議끝에 昨年 12월에 最終案이 作成되어 文教部에 提出되었는데 尙今 이렇다 할 만한 反應이 없다. 參考로 同建議案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국립대학교
부속도서관
직제확립 및 정원확충에 관한
건의안

무릇 대학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도서관 시설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급선무임은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인바 10여년전에 가위 맨주먹으로 발족한 5개 지방대학교는 부족한 도서관에 산과 미비한 시설로 악전고투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직제미정으로 인한 관리인원의 부족 때문에 그 맡은바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물론이고 이대로 나아갈진대는 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기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으므로 그 실정을 알어드리고 조속히 대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직제확립

현재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의 직제만이 국립대학교 설치령 제13조의2에 의하여 확립되어 있을뿐 여타의 5개 지방 국립대학교 부속도서관의 직제는 하등의 법령에 의한 규정이 없어 혼란상을 정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서관 고유의 전문적 기능발휘에 지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봉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어가고 있으니 별첨의 조직표를 참작하시어 지방국립대학교 부속도서관의 직제도 조속히 법령으로 확립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 정원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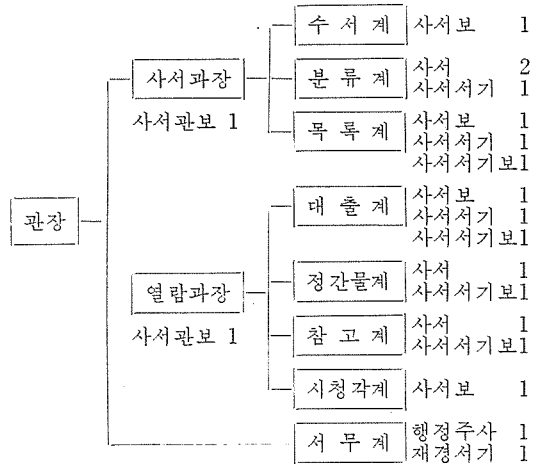
국립대학교 공무원 정원표(국가공무원 정원령)에서 각 국립대학교별 사서직의 직급별 정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별 학교별	사서 관	사서 관보	사서 서	사서 서보	사서 서기	사서 서기보	계
서울대학교		2	11	3	7	5	28
경북대학교			1	1	1	3	6
전북대학교			1				1

전남대학교			1	1	1		3
부산대학교			1	1			2
충남대학교				1			1
계		2	15	7	9	8	41

위의 정원표에서 보면 지방의 각 국립대학교 부속도서관은 1명 내지 6명의 직원으로 운영하라는 것인바 이는 직무의 질과 양을 따지기에 앞서 직원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도서관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6차에 걸친 국립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서장회의를 통하여 연구검토한 결과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국립대학교 도서관이라면 최소한도 별첨의 조직표와 같은 기구와 정원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니 이에 준하여 정원을 배정하여 주시도록 건의합니다.

<별첨조직표>



건의자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김	계	숙	㉞
경북대학교	도서관장	나	병	욱	㉞
부산대학교	도서관장	이	완	영	㉞
충남대학교	도서관장	김	재	권	㉞
전북대학교	도서관장	박	은	규	㉞
전남대학교	도서관장	양	병	우	㉞

■ 專門職司書의 地位 및 處遇問題

이 問題는 非單 大學圖書館에 從事하는 圖書館人들 뿐만 아니라 全體 圖書館人들의 非常한 關心을 모으고 있는 問題이다. 이 問題에 關해서는 最近 日本에서도 활발히 論議되고 있는것 같다. 1960年 12月3日부터 10日까지에 걸쳐 富山縣內에 公共圖書館 29個館의 助手를 除外한 常勤職員과 大學圖書館 5個館의 庶務職員을 除外한 常勤職員을 合친 122名에게 「일하는 圖書館員의 生活과 意見」이란 題目으로 앙케트를 依頼하여 意

見을 물었는데 그 結果 3項의 E의 設問:公務員의 罷業權에 對하여 貴下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對하여,

- ① 復活되도록 努力해야 한다=50名(46%)
- ② 全體의 奉仕者니까 必要없다=27名(25%)
- ③ 모르겠다=20名(18%)
- ④ 時期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復活되리라고 생각 한다=12名(11%)

로 나타났으며 4項의 H의 設問:圖書館員의 勞動條件을 改善하기 爲하여 貴下는 當面 어떤 方策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에 對하여

- ① 所屬組를 通하여 改善한다=29名(25%)
- ② 圖協을 中心으로 專門職制를 確立하도록 努力 한다=26名(23%)
- ③ 圖書館員自身의 새로운 組織(例를 들면 지난 11 月에 國會圖書館職組를 中心으로 發足한 圖書館活動推進全國勞動組合協議會)도 強化한다= 26名(23%)
- ④ 國家나 縣等 行政機關의 理解를 기다린다=24 名(21%)
- ⑤ 모르겠다=9名(9%)

로 나타남으로써 處遇改善에 強力한 意志를 보여주고 있다⁽²⁾.

美國의 著名한 圖書館學者 Guy R. Lyle 氏는 그의 著書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에서 專門職司書職員은 完全히 敎職員으로써 設定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며⁽³⁾, ALA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美國圖書館協會 大學圖書館基準)에서 보던 專門職司書는 敎授의 地位를 누려야 하며 敎授陣이 亨有하는 恩典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는 在職保障, 病假, 充分한 休暇, 適切한 退職計劃, 7年만에 주는 特別休暇와 같은 事項들이 包含되어야 한다. 司書의 俸給스케들은 敎授陣과 同一하여야 한다. 業務遂行에 있어서 나타나는 特出한 能力에 對하여서는 昇進이나 昇給으로써 優待를 해줄 設計도 역시 되어 있어야 한다⁽⁴⁾.

1964年 美國의 認可된 圖書館學校를 卒業하여 새로 輩出된 司書는 前例없는 多數인 2,500餘名이었는데 그중에서 就職한 것으로 알려진 2,025名에 對한 俸給額調査에 依하면 年俸 \$3,600 乃至 \$15,944이었고 平均 額數는 \$6,145이란 新記錄에 이르렀다. 司書職員의 平均 年俸額數를 1951년까지 遡及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1年	\$ 3,000 — \$ 3,300
1952年	\$ 3,350 — \$ 3,400
1953年	\$ 3,575 — \$ 3,625
1954年	\$ 3,650
1955年	\$ 3,900 小過
1956年	\$ 4,190

1957年	\$ 4,450
1958年	\$ 4,683
1959年	\$ 4,862
1960年	\$ 5,083
1961年	\$ 5,365
1962年	\$ 5,661
1963年	\$ 5,902
1964年	\$ 6,145

이 調査에 依하면 14年間 꾸준히 계속적으로, 그리고 현저히 每年 約 200~300弗씩 引上되어 왔음을 看取할 수 있다⁽⁵⁾.

1930年代에 圖書購入을 爲하여 諸初級大學에 基金을 分配해 주었던 Carnegie 財團은 그들의 圖書館들이 財政의 支援을 받기 願한다면 廣範圍하게 網羅된 어느 程度의 要件을 充當하라고 主張한바 있다. 이와 같은 Carnegie 財團例의 期待가 그의 基準에 反映되었던 것 인데 人事面에 있어서 이 Carnegie 基準은 그 總則에서 司書는 敎育프로그램에 包含되어야 하고 敎育의 事項에 關해서도 行政의 事項에 關해서와 마찬가지로 關與해야 한다고 規定했을뿐 아니라 나아가서 司書들은 敎職員의 一員으로서 認定되고 俸給, 亨有條件 및 昇進에 있어서도 거기에 相應한 認定을 받는다 다고 規定하고 있다.

The Junior College Libraries Round Table (Junior College Libraries Section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가 1930년에 推薦한 基準에 依하면 身分에 關하여 head librarian에 任命된者는 正敎授 및 學科長과 同等한 階級이 주어져야 하고 其他의 專門職司書職員은 學科長 바로 밑의 敎職級과 同等한 級이 주어져야 하며 專任講師 以下の 級이 주어져서 는 안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은 1960년에 採擇된 基準에서도 그대로 規定하고 있으며 모든 境遇에 그렇다 고는 할수 없지만 大部分의 專門職司書들은 敎職員의 身分을 가지고 있다.⁽⁶⁾

1898년에 이미 존스·호프킨스大學의 길먼(Gilman)總長이 말하였듯이 司書職은 敎授職과 同級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司書는 비록 敎壇에 서서 講義를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敎授職能(teaching function)은 敎職員의 그것에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階級上의 分別을 하게 된다면 그의 專門的 責任은 그를 行政團에 보다는 오히려 敎授團에 屬하게 할 것이다. 美國圖書館協會의 職位分類 및 俸給計劃報告書에도 專門司書職員은 敎職에 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⁷⁾. 1948年4月에 施行한 美國의 大學 및 研究圖書館協議會(A.C.R.L.)의 調査에 依하면 圖書館職員에게 完全한 敎授職級을 부여한 大學은 24個에 達하고 있는데 이는 大學圖書館

에 從事하는 專門職司書들의 地位 및 處遇에 對하여 決定的인 方向을 指示해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⁸⁾.

그런데 우리나라 大學圖書館界의 現實과 動向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에 從事하고 있는 專門職司書들은 그들이 부여받은 地位가 너무나도 낮을 뿐더러 處遇에 있어서도 너무나 賤待를 받고 있기 때문에 對外的 羞恥感에서 그들의 地位와 處遇條件을 率直하게 表明하기를 忌避하는 傾向이 顯著하다는 것은 公式的인 統計數字와 現實間의 隔差가 이것을 端的으로 證明해 주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有能한 司書들이 圖書館에서 脫出하려는 意向을 갖게 되는 것도 無理가 아니며 事實上 이미 脫出한 例도 적지 않다. 圖書館의 運命을 雙肩에 걸머진 司書들이 圖書館에 勤務하면서 意氣銷沈하여 本然의 使命感을 잃은채 脫出策의 講究에 沒頭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 大學圖書館界의 現實은 圖書館運營上의 致命的인 難點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現實이 早速히 改善되지 않는限 우리나라 大學圖書館의 將來는 危機를 免하기 어려울 것이다.

■ 豫算의 問題

大學圖書館豫算의 編成이나 執行에 關하여 낱날의 圖書館이 一律的으로 必히 遵守하여야 할 一定한 規則을 制定한다는 것은 不可能하고도 無意味한 것이라 하겠지만, 大學圖書館의 運營에 있어서 그 豫算의 規模가 얼마나 되어야만 適正하다 할 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것이 各部門에 어떠한 比率로 割當執行되어야 合理的이며 正常的인가 하는 것은 至極히 重要한 問題이면서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이 韓國의 大學圖書館界의 實情이다.

먼저 美國의 例를 본다면 大學圖書館의 豫算의 規模는 그가 所屬하고 있는 大學의 總豫算總額의 5%를 基準으로 하고 있다⁽⁹⁾. 다음으로 日本의 例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5%로 定해져 있다⁽¹⁰⁾. 우리나라의 各大學圖書館이 얼마나 後進性을 지니고 있는가는 果然 그 圖書館의 豫算總額이 그가 所屬하고 있는 大學의 豫算總額의 5%에 얼마나 未達하고 있는가를 計算하여 보면 大略 알 수 있는 일이다.

美國圖書館協會의 大學圖書館基準에서 보면 “最近數年間 大學圖書館統計表에 나타나 있는 比較可能한 諸學校에 있어서의 教育的인 一般的 學校費用全體에 對한 圖書館費用의 諸比率이 中間值 以下로 만일 自己 圖書館豫算이 눈에 보이게 처진다면, 그 大學當局者는 이것을 하나의 危險信號로 생각해야 한다”⁽¹¹⁾고 警告하고 있다.

다음으로 大學圖書館豫算의 各部門別比率에 關하여 考察하여 보기로 하자. 美國의 單科大學 및 綜合大學

의 經驗을 通하여 過去에 設定된 概略的인 公式에 依하면 50~60%가 人件費에 充當되어야 하고, 30~40%가 圖書, 定期刊行物 및 製本費로 充當되고, 10%가 消耗品 및 其他의 項目에 充當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에도 數年間 繼續하여 豫算總額이 實質的으로 增加되지 않을 때는 人件費의 퍼센티지는 上昇하기 마련이다. 1946—47년에 있어 42個 大學圖書館中 29個館이 60%以上을 俸給 및 賃金으로 支出하였고 5個館만이 40%以上을 圖書購入費로 支出하였다는 事實은 注目할만하다. 이 局限된 證據로 最終的結論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俸給支出이 60%以下가 된다면 이는 不充分한 奉仕를 招來함으로써 結局은 圖書費 그 自體가 마련된 目的을 沮害하게 된다는 것이다⁽¹²⁾. 經驗에 비추어 보면 훌륭한 大學圖書館은 圖書費의 2배를 人件費로 支出하는 것을 正常으로 삼고 있다⁽¹³⁾.

■ 結 論

以上에서 論述한 問題들은 決코 오늘날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만이 홀로 當面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問題들을 어느程度 解決해 온 先進諸國의 大學圖書館들도 그 發展初期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大學圖書館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諸問題에 當面했음을 우리는 그들의 發展史에서 窺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問題들의 解決策으로서 某種의 非常한 方法을 使用하거나 그렇지 못할 境遇에는 先進諸國에서 이미 使用해 온 慣例的方法을 利用하는 두가지 方法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런데 前者는 實力的 背景이 微弱하기 때문에 거의 不可能할뿐만 아니라, 設令 可能하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우리나라 實情에 비추어 보건데 자칫하면 逆效果를 招來할 危險性이 濃厚하여 避하는 것이 賢明한 方策일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擇할 수 있는 方法은 後者의것 뿐이다.

果然 先進諸國에서는 어떠한 方法으로 그러한 問題들을 解決하여왔던가. 美國에서는 일찌기 大學圖書館人들이 圖書館協會를 通하여 所謂 美國圖書館協會 大學圖書館基準(ALA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을 作成하여 여기에 法的規制力을 認定받았다. 日本에 있어서도 所謂 大學圖書館改善要項이라는 것을 作成하여 文部省의 認定을 받아 行政的으로 그 施行을 보게 되었던바 文部省은 1953年 各國立大學長에게 同改善要項을 示達하였다⁽¹⁴⁾.

論者は 여기서 美國圖書館協會의 大學圖書館基準과 日本의 大學圖書館改善要項 및 國立大學圖書館改善要項等を 參酌하여 國際水準을 考慮에 넣고 우리나라의 現實을 勘案하여 施行可能性이 있는 우리나라 固有의 大學圖書館改善要項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다 法的規

制力을 加하여 行政機構를 통해서 強力하게 施行토록 함으로써 既述한 大學圖書館運營上의 諸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거나 合理化해 나갈 것을 提言하는바이다.

《參 照 書 目》

- ① 國立學校設置令 第13條의2 : 서울大學校附屬圖書館에 庶務課·司書課·閱覽課와 調查課를 둔다. <改正 1965.7.9 大令 2171> 庶務課長은 行政事務官, 司書課長과 閱覽課長은 司書官 또는 司書官補로 補하고, 調查課長은 教授, 副教授 또는 助教授로 兼補한다. <改正 1965.7.9 大令 2171>
- ② 參納哲郎 : アンケートにみる 圖書館員の勞動者意識(日本圖協, 圖書館雜誌 Vol. 60, No. 2, 1966. 2, p. 12-14)
- ③ Guy R. Lyle :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ies, 2nd ed. rev. New York, Wilson, 1949, p. 59-60, 276-283
- ④ ALA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李炳穆 譯, 도협월보, Vol. 4, No. 2 (1963. 3) p.24
- ⑤ E.D. Strout & R.B. Strout: Sixty-One Forty-Five in Nineteen Sixty-Four, Library Journal, Vol. 90, No. 12 (June 15, 1965) p. 2741-2744
- ⑥ Fritz Viet: Personnel for Junior College Libraries, Library Trends, Vol. 14, No. 2 (Oct. 1965) p. 145-150
- ⑦ Guy R. Lyle :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ies, 2nd ed. rev. New York, Wilson, 1949, p. 276-7
- ⑧ Ibid. p. 278
- ⑨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20 (July 1959) p. 274-280 : ALA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李炳穆 譯 (도협월보 Vol. 4, No. 2, 1963. 3. p.22)
- ⑩ 本多顯彰 : 大學教授 一知識人の地獄極樂— 東京, 光文社, 1956, p. 95
- ⑪ ALA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李炳穆 譯 (도협월보 Vol. 4, No. 2, 1963, 3, p. 88)
- ⑫ Guy R. Lyle : The Administration of College Libraries, 2nd ed. rev. New York, Wilson, 1949, p. 462-3
더욱 具體적인 統計를 보려면 Wilson & Tauber : The University Library,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p. 84-89 : Statistics of College & University Libraries 를 참조하십시오.
- ⑬ ALA Standards for College Libraries 李炳穆 譯 (도협월보 Vol. 4, No. 2, 1963. 3. p. 24)
Wilson & Tauber : The University Library, 2nd e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p. 86-89
- ⑭ 椎名六郎 : 圖書館學概論, 東京, 學藝圖書, 1960, p. 102

도협 월보 원고 모집

本報에 掲載할 原稿를 會員諸位에게 널리 募集하오니 다 음과 같은 內容의 論文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 圖書館學 및 事業에 關한 論文.
- 2. 圖書館界의 뉴스, 人事消息, 其他 消息.
- 3. 圖書館과 相關되는 隨筆 (200字 原稿紙 30枚 內外).
- 4. 其他 本報에 掲載할 수 있는 內容의 것.

(磨勘은 每月 15日 限)

編 輯 室

1966年度 協會費를 早速히 納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國의 團體 및 個人會員께 부탁 드립니다. 第12次 定期總會에서 承認하여 주신 1966年度 事業은 國庫補助事業 9個, 自體事業 6個 合하여 15個種의 事業을 하여야 합니다. 이 많은 事業을 成功裡에 目的을 達成하여 우리들의 權益을 높이고자 하는 共同 目標를 이룩 할 수 있도록 協助를 바랍니다. 一線에서 苦生하시는 會員들의 어려운 事情이 있을줄 思料하오니 早速한 時日內에 會費를 納付하여 주시도록 最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 務 局